제 2017-21 호
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1. 상호(명칭): 다무라케미컬코리아(주)

2. 성명(대표자): 대표이사 (생년월일:)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공단1로 98-22 (신건지동)

(전화번호: 0316762374)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지하탱크, 옥내저장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총 3 기 총용량: 112,480.00 ℓ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 : 유출방지

나. 설치내용: 탱크실, 바닥도장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17년 7월 26일

경기도 안성적장(5

<변경 사항>

일	자	내용	확	인

<행정처분일자>

일	자	내 용	확	인

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
제조소	유류(동식물성 제 외) (톨루엔 등)	14,770.00 l	1	2002/02/26	제조소
지하탱크	기타 (IPA)	20,000.00 l	1	2002/02/26	제조소
옥내저장	유류(동식물성 제 외) (톨루엔 등)	77,710.00 l	1	2002/02/26	제조소

<참고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
2017-07	-26	누락사업자 신규 추가	정성	수